

## 용인시 노인·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

제정	1991. 12. 2	조례 제1257호
개정	1996. 3. 1	조례 제 8호(조례·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)
	1996. 11. 27	조례 제 69호
	1998. 5. 6	조례 제 124호
	2005. 10. 5	조례 제 686호
	2007. 7. 1	조례 제 874호
일부개정	2020. 9. 28	조례 제2057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노인·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을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20. 9. 28]

제2조(명칭 및 위치) 용인시 노인·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(이하 “회관”이라 한다)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7. 7. 1, 2020. 9. 28>

1. 용인시 기흥구 기흥동 노인·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: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692-1번지
2.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노인·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: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 35-11번지
3.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노인·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: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149-1외 1필지

[전문개정 2005. 10. 5]

제3조(시설)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·아동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. <개정 1996. 11. 27>

1. 노인정
2. 보육시설
3. 독서실 및 부대시설
4. 기타 운영에 필요한 시설

제4조(업무)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.

1. 노인의 여가선용활동 지원
2. 보육시설 설치운영
3. 독서실 및 부대시설의 운영
4. 용인시 발전을 위한 애향운동 전개
5. 기타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운영관리) ① 회관은 운영위원회의 자율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관리자를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할 때에는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계약함에 있어서 회관의 시설보호와 기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의 운영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.

제6조(운영위원회 구성) ① 회관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.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「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 <개정 2005. 10. 5, 2020. 9. 28>

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<개정 2020. 9. 28>

③ 위원은 당해지역의 노인회장, 리·통장대표,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, 부녀회장, 지역개발위원장, 청소년회장, 기타 지역 내 거주인사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중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읍·면·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.

④ 지역 내 기관·단체장, 출향인사 중 지역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10인 이내의 특별위원으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. <개정 2005. 10. 5>

제7조(운영위원회 임무) ① 위원장은 회관의 총괄적인 운영 및 책임을 맡는다.

② 위원회는 회관의 운영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회관내의 시설물 및 기금을 관리한다.

③ 특별위원은 회관운영에 대한 자문 및 재정적,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한다.

제8조(양도 및 시설변경금지) 제5조 규정에 의거 회관운영 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.

제9조(이용) 회관의 이용은 시내에 거주하는 전 시민으로 한다.

제10조(임대)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공공목적 또는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.

제11조(사용료) ① 회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를 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해야 한다.

제12조 삭제 <2020. 9. 28>

제13조(운영비 보조) ① 시장은 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관리 인건비
2. 시설유지 운영비
3. 사업비
4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의 경우 보조비율은 전체운영비의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.

<개정 2005. 10. 5>

제14조 삭제 <2020. 9. 28>

제15조 삭제 <2020. 9. 28>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6. 3. 1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1996. 11. 27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8. 5. 6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10. 5 조례 제686호>

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7. 7. 1 조례 제87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. 9. 28 조례 제2057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」 별표 2 노인복지과의

제1호의 제18호의 근거법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용인시 노인 아동을 위한 다목적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제5조
--

[별표]

다목적 복지회관 사용료

(단위: 원)

구분 시설명	운 영 상 황	개 방 시 간	이 용 료	수용능력	비 고
계					
작 업 장	직영 또는 임대	08:00~3:00	임대시 평당 월 10,000원	20명	
노 인 정	무 료	08:00~23:00	무 료	35명	
독 서 실	"	09:00~23:00	1일 500원	35명	
기타시설					
회 의 실	무 료	필 요 시	무 료	130명	
유 아 실 (유치원)	직영 또는 임대	08:00~19:00	직영시 : 1인 월 30,000원 임대시 : 평당 월 10,000원	45명	
기타시설					

※ 보증금이 있을 시는 은행이율로 계산하여 월사용료에 계산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20. 9. 28>

### 추천서

직책	주소	성명	생년월일

위의 자를 「용인시 노인·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」 제6조제3항(위원추천)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합니다.

년 월 일

읍·면·동장

(인)

용인시장 귀하

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20. 9. 28>

## 추천서

직책	주소	성명	생년월일

위의 자를 「용인시 노인·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」 제6조제4항(위원추천)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합니다.

년 월 일

복지회관 운영위원회 위원장

(인)

용인시장 귀하